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29

대 전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누103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A
피고, 항소인	1. [redacted]군수
	2. [redacted]군수
	3. [redacted]시장
	4. [redacted]군수
	5. [redacted]자치시장
	6. [redacted]군수
	7. [redacted]군수
	8. [redacted]군수
	9. [redacted]군수
제 1 심 판 결	대전지방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구합522 판결
변 론 종 결	2017. 6. 22.
판 결 선 고	2017. 9. 28.

주 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29

1.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[redacted]군수, [redacted]군수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.

 원고의 피고 [redacted]군수, [redacted]군수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.

2. 피고 [redacted]군수, [redacted]군수, [redacted]시장, [redacted]시장, [redacted]군수, [redacted]군수, [redacted]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원고와 피고 [redacted]군수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[redacted]군수가, 원고와 피고 [redacted]군수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, 원고와 피고 [redacted]군수, [redacted]군수, [redacted]시장, [redacted]시장, [redacted]군수, [redacted]군수, [redacted]군수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0,675,89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국유임산물 매각 입찰 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가 된 후 대한민국과 사이에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국유림법'이라 한다) 제27조 제1항 등에 기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29

나. 피고들은 2015. 7. 30.경 행정자치부로부터 '국유 입목 매각자료' 통보를 받았고, 원고가 위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을 통하여 위와 같이 '입목'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'처분일' 란 기재 일자에 취득세(가산세 포함) 및 농어촌특별세(가산세 포함)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(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피고 [redacted]군수, [redacted]군수의 처분을 각 '피고 [redacted]군수의 부과처분', '피고 [redacted]군수의 부과처분'이라 한다).

다. 피고[redacted]군수, [redacted]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부과처분 당시 원고에게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,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'재처분일'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그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(가산세 포함) 및 농어촌특별세(가산세 포함)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(이하 피고 [redacted]군수, [redacted]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재처분을 통틀어 '이 사건 각 처분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, 8 내지 10호증, 을가 제1 내지 7호증, 을나 제1 내지 3호증, 을다 제1, 2호증, 을라 제1, 2호증, 을마 제1 내지 3호증, 을바 제1, 8, 9, 10호증, 을사 제1, 3 내지 5호증, 을아 제1 내지 4호증, 을자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피고 [redacted]군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,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)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29

직권으로 살피건대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[redacted]군수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7. 7. 10.경 피고 [redacted]군수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. 따라서 원고의 피고 [redacted]군수에 대한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다만, 피고 임실군수는 위 부과처분 당시 취득세 및 가산세의 산정내역을 구분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2017. 7. 10. 새로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,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).

3. 원고의 피고 [redacted]군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본안전항변의 요지

이 사건 소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결국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· 시장 ·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(구 지방세기본법(2016. 12. 27.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8조). 갑 제2호증의 8, 을자 제3,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5. 8. 19. 피고 [redacted]군수의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서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. 11. 20. 위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위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 나아가 위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29

청에 대한 심판이 있은 후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(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), 결국 원고의 피고 [redacted]군수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.

4.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(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)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"이 사건 각 계약"을 "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국유임산물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각 계약'이라 한다)"으로, 제7면 제19행의 "일 뿐"을 "것일 뿐"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[redacted]군수, [redacted]군수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,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[redacted]군수, [redacted]군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 [redacted]군수, [redacted]군수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, 피고 [redacted]군수, [redacted]군수, [redacted]시장, [redacted]시장, [redacted]군수, [redacted]군수, [redacted]군수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,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제32조, 민사소송법 제98조, 제10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29

재판장 판사 허용석

판사 오명희

판사 박우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29

[별지 1]

부과처분 목록 (단위 : 원)

순번	피고	처분일	재처분일	취득세 (가산세포함)	농특세 (가산세포함)
1	[redacted]군수	2015.8.26.	2016.9.26.	4,203,520	359,150
2	[redacted]군수	2015.9.3.	2016.10.11.	9,390,650	801,860
3	[redacted]시장	2015.9.3.	2016.9.21.	676,030	56,400
4	[redacted]군수	2015.9.10.		1,592,840	138,550
5	[redacted]특별시장	2015.8.10.	2016.10.17.	1,669,740	103,720
6	[redacted]군수	2015.9.1.	2016.10.4.	2,627,260	262,720
7	[redacted]군수	2015.8.7.	2016.10.19.	399,310	34,670
8	[redacted]군수	2015.8.7.	2016.10.19.	2,784,400	236,040
9	[redacted]군수	2015.8.13.	2016.10.5.	4,243,500	300,000
10	[redacted]군수	2015.8.12.		732,300	63,230
	세목별 합계			28,319,550	2,356,340
	총합계			30,675,890	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29

[별지 2]

순번	소재지	매각대금 (원)	수종	수량 (㎡)	잔금지급일 (취득일)
1	[redacted]군 B	153,000,000	활엽수, 소나무, 낙엽송, 잣나무	3,131.86	2013. 11. 25.
2	[redacted]군 C	82,900,000	소나무 외 3종	2,083.82	2011. 12. 28.
3	[redacted]시 D	28,000,000	소나무 외 1종	1,001.39	2015. 6. 11.
4	[redacted]군 E	343,000,000	소나무 외 1종	8,663.69	2013. 12. 19.
5	[redacted]군 F	51,820,000	리기다 외 2종	929.78	2012.6.13.
6	G 외 4필지	51,860,000	소나무 외 2종	1,055.30	2012. 1. 16.
7	H 외 1필지	26,000,000	소나무 외 3종	555.41	2012.1.16.
8	[redacted]군 I	25,000,000	활엽수 외 2종	835.88	2013. 1. 9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29

9	[redacted]군 J	150,000,000	리기다 외 2종	4,209.90	2013. 9. 2.
10	[redacted]군 K	13,150,000	활엽수 외 2종	494.92	2012. 7. 11.
11	[redacted]군 L	106,000,000	활엽수 외 2종	2,960.66	2014. 5. 26.
12	[redacted]군 M	82,900,000	소나무 외 3종	2,083.82	2011. 12. 28.